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3331호) 공포 알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331호)이 '15.5.18. 공포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 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확대 및 기록 보관 의무 면제 등(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 나. 마약류 통합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제11조의2, 제41조)
- 다. 기타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및 처분·벌칙 조항 정비(제9조, 제44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 약사법 개정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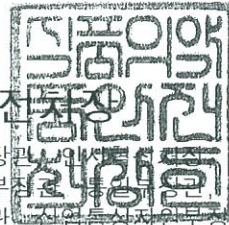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 범위 확대(약사법 제68조의4)

2. 아울러,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5월 18일(월)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13331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주무관 김희선 사무관 대결 2015. 5. 21.
성동천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7805 (2015. 5. 21.) 접수

우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43-719-2800 / hisun1128@korea.kr / 대국민 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